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산불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내용 알림

1. 산림청 산불방지과-538(2015.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5.1.29.자로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항의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반영되도록 조치바랍니다.

- 휴일 및 토요일 :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가능
- 월간 : 70시간까지 시간외근무명령 확대 가능

4. 다만,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 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자연생태과-2219 (2015.02.05.) 접수 공원녹지과-2286 (2015.2.6.)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0 / 전송 02-2133-1083 / mygreen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